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.

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김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26호,
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시간 외 전화, 문자메시지, SNS 등
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서울시 공무원의
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
것입니다.

○ 2016. 6. 22.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

일부개정법률안은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으로

알려지면서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지만,
금지조항만 있고 처벌규정 미비로 인한 실효성 문제와
비상상황에서의 대처 불가능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어
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○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

“서울시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
노력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

○ 그 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일과 가정의 양립과
직원 상호간 배려하는 조직문화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
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.

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

2017. 8. 30

행정국장 김 인 철